



2007

기술보증기금 벤처지원안내

- ▶ 기업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평가중심의 보증지원체제로 보증심사 프로세스 전면 개편
- ▶ 기술 중심의 평가시스템 확립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전문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성장 동력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전문기관이다.

국내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명실 공히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으뜸기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특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까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을 총 보증의 8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술력 위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기술평가보증을 지속 확대하여 국내 기술금융을 선도, 2009년까지 기술평가보증을 총 보증잔액의 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벤처·이노비즈 기업 발굴에 기금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발굴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경험과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기술금융지원 시스템의 확대 및 정착화를 도모하면서 이른바 '세계적인 기술평가기관'으로의 발돋움할 것이다.

◎ 2007년도 보증공급 계획

■ 총 보증공급 (단위: 억 원)

구분	'06년 실적	'07년 계획
총 보증	105,876	105,000
신규보증	27,545	33,000

■ 중점보증공급 (단위: 억 원)

구분	'06년 실적	'07년 계획
기술혁신기업보증	80,204	83,000
기술평가보증	35,930	42,000
벤처기업보증	43,923	45,000
Inno-Biz기업보증	27,670	30,000
기술창업기업보증	29,020	30,000

1. 기술혁신기업 중점지원

■ '07년도 총 보증공급 규모는 10조 5,000억 원

- 총 보증공급 규모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신규보증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

■ 기술혁신기업 등 특화영역에 지원역량 집중

- 고액·장기·한계기업의 보증감축 재원을 기술혁신기업의 신규보증 재원으로 활용
 - * 기술혁신기업보증 비중(%) : ('06) 76.3 → ('07) 80.9
- 기업의 미래가치 위주로 심사하는 기술평가보증을 지속 확대
 - * 기술평가보증 비중(%) : ('06) 35.2 → ('07) 40.9

■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 한국전자거래협회의 「B2B 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B2B 보증시스템 구축 및 제도 도입
 - 전자거래협회의 B2B 통합플랫폼과 기금의 전자보증시스템을 연계하여 B2B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및 B2B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시행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기한을 당초 '06년 말에서 '07년 말까지 연장
 - 부분보증비율을 확대(90%)하고 매출액에 관계 없이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

2. 기술금융 지원 역량 강화

■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적극 발굴

- 기술평가의 공신력 제고로 벤처기업 선정평가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 벤처기업 발굴(개) : (06) 4,637 → (07) 5,500

■ 기술평가와 연계한 이익공유형상품 확대

-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로 기술금융 활성화 유도
 - 민간 V.C.I 기피하는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실패를 보완 및 High-tech & High-risk형 중소기업 금융지원인프라를 보강
 - * '07년도 보증연계투자 계획 : 100억 원

◎ 기술평가보증 제도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 중점지원 대상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INNO-BIZ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평가등급 CCC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미래성장우량산업(6T 산업) 영위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 기술인증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INNO-BIZ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보의 선정 평가를 거쳐 중기청에서 선정
기술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 보증지원 체계



■ 주요 보증상품

보증상품명	주요 내용
대출보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 받을 어음,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지급보증의보증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 포함)과 농·수·축협외 수입 신용장 발행에 대하여 보증

보증상품명	주요 내용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
구매자금보증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정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네트워크론보증	모기업(구매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과 금융기관이 납품에 필요한 생산·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과 대출을 우대지원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

■ 기술평가방법

보증신청기업의 기술사업을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보증지원

■ 평가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예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에 앞서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 사항
↓	
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및 평가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 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 능력 확인
↓	
소요자금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용도, 자금조달계획, 사업추진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 금액 사정
↓	
기술평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2차 심의를 통한 평가결과와 신뢰도 제고
↓	
보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대상기업별 기술평가보증

-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자금 종류	대상 기업
중소·벤처 창업자금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 아래 해당 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행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Inno-Biz기업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및 중기청 기술 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Biz기업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및 중기청 기술 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자금종류	대상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 벤처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요청한 기업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 (중소기업청)	-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

•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상 품	대상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금융기관)	- 설립 후 3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기술개발공동지원 보증 (금융기관)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INNO-BIZ 보증 (금융기관)	- INNO-BIZ 기업
-----------------------	---------------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 보증 (금융기관)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	-----------------------------------

우수제품상품화 보증 (중소기업은행)	- 창업 후 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개발 우수제품상품화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	--

지역혁신특성화보증 (산업자원부 주관)	-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 중 「프로젝트사업」의 참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	---

중전기 기술개발자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벤처기업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협력·개발코자 하는 중소기업 - 중전기 기술개발과제를 개발코자 하는 중소기업 등
---------------------------	---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특허청)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

• 기금자체 추진사업관련 보증

상 품	대상기업
창업패키지보증	- 우수기술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기업인수보증	- 기업인수합병 또는 (해외)기술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	------------------------------------

벤처재기보증	-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사무국 사전심의 통과한 실패한 벤처기업
--------	-------------------------------------

기술이전보증	-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	---------------------------------------

한도거래보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이고 재무 등급이 'CCC' 등급 이상인 기업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이 아닌 기업 •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

우수기업 평가보증	- 우량기술기업 - 기술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받은 기업 - NET, NEP, 핵심자본재 품목 개발 외 - 벤처기업 - INNO-BIZ 기업
-----------	---

상 품	대상기업
혁신기업 평가보증	- 우량기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IT, BT, NT, CT, ET, ST 등 미래성장유망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기술평가제도

■ 기술평가란?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

■ 기술평가의 신청인

- 기술을 보유한 재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기술평가 신청자료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위에 불구하고 평가목적 또는 개별계약에 의해 별도 신청자료 운용할 수 있음.

■ 기술평가의 유형

-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대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표시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 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종 류	주요 내용
기술가치 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술력 가산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보증 연계지원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기술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 타당성 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 평가
종합기술 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우량기술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 한도거래보증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 평가 등

◎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 자금조달 지원제도

가. 보증연계투자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보증·투자연계 복합상품

■ 대상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거래하는 기보증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한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기술평가등급	재무등급
일반한도(10억 원) 이내	BB 등급	BB 등급
특별한도(30억 원) 이내	BBB 등급	BBB 등급

주)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인 경우 재무등급 적용 생략 가능

■ 투자업무 취급절차

- 상담(영업점) ⇨ 기술평가 ⇨ 투자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의결

■ 투자방식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구 분	일반 한도	특별 한도
투자한도	10억 원	30억 원
통합한도(투자+보증)	50억 원	70억 원

■ 문의

중앙기술평가원 투자팀 ☎ 02-567-6800 (내선 : 610, 620)

나. 기술평가투자보증

■ 기본과 협약이 체결된 은행 또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인수하는 우수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하여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고 성공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상품

■ 대상기업

- 기술혁신형기업, 협약기관 추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대상채무

- 기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업무협약기관 :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파트너벤처캐피탈, 현대기술 투자, MOST5-2투자조합

■ 사채발행조건 등

- 상환기간 : 2년 이상
- 발행금액 : 5천만 원 이상
- 발행방법 : 비공모발행(사모발행)
- 사채금리
 - 표면금리 : [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이내
 - 만기보장수익률

[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 Spread(3.0%)] 이내

- 보증비용 및 출연비용

보증비용	70%	50%	30%
출연비용	자본 이득의 20%	자본 이득의 10%	자본 이득의 5%

◎ 2007년도 업무개편 주요내용

■ 보증지원방법 개선을 통한 보증지원체계의 일원화

- 기업이 보증 신청시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하여,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 미만, 사업안정성우수기업 → 기술심사보증으로 지원

■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사정방식 변경

-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 방식으로 일원화(매출액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방식 폐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기술평가보증 1억 원 이하, 기술심사보증 50백만 원 이하 →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특례

■ 기술평가수준의 적용방법 변경

- High-Level 기술평가표 적용 기술평가보증 취급점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
- 보증금액별 평가수준으로 적용방법을 단순화

구 분	대상보증금액	평가수준
1	4억 원 초과	High-Level
2	4억 원 이하	Middle-Level
3	2억 원 이하	Basic-Level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을 신기술사업자까지 확대

■ 보증료 체계 개선

- 기술평가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증료율을 적용하되, 기술평가등급과 재무등급을 감안하여 보증료율이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료 산출

■ 평가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료 부담 완화

- 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료는 200,000원의 정액평가료로 단일화
- 평가보증금액 50백만 원 이하인 소액보증신청기업은 기술평가료 전액 면제
- 기술심사보증에 의한 보증지원 기업은 기수납한 기술평가료 전액 환급

■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접수자료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거래확인서 접수대상 범위 축소
 - 주거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한하여 접수, 여타기관의 대출내역을 기업여신 일보/월보를 통해서 확인
- 보증금액에 구분없이 현장조사시 보증약정 체결 가능
- 신청서류 접수시부터 보증서 발급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신청서 접수, 출장에정일자, 보증서발급 예정일자 등을 SMS로 발송

벤처기업 우대지원

- 보증한도 우대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50억 원(일반기업은 30억 원)
- 보증료율 0.2% 감면
- 85% 고정부분보증비용 적용(일반기업은 등급에 따른 50~90% 차등 적용)
- 우대부분 보증대상기업으로 운영 등